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522 7552 호

## 기본사항

<b>보험계약자</b>	102-82-09623 (재)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b>피보험자</b>	305-82-2157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보험가입금액</b>	금 四億 圓整 ₩400,000,000-	<b>보험료</b>	₩662,080-
<b>보험기간</b>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215 일간)		

## 보증하는 사항

<b>보증내용</b>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b>특별약관</b>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특기사항</b>			
<b>주계약내용</b>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험기간개시전발생원채무액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 ₩400,000,000-	

##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상택



<b>증권 발급</b>	<b>지점</b>	동대문지점	유영옥	02-924-0031
		서울 중구 을지로 264 13층 롯데피트인 (을지로6가)		
	<b>대리점</b>	일송보험	안금석	02-928-8060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 (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위원회

201712120023895-0012-003

후면

##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홈페이지([www.sgic.co.kr](http://www.sgic.co.kr)) 또는 ②전국 영업지점이나 보상심사 담당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b>보상심사담당부서</b> (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b>강북보상지원단</b>	<b>02-3671-8115</b>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http://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계약자교부용]

#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7 0522 7552 호

<b>보험계약자</b>	102-82-09623 (재)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b>피보험자</b>	305-82-2157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b>보험가입금액</b>	金 四億 圓整 ₩400,000,000-	<b>보험료</b>	₩662,080-
<b>보험기간</b>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06월 30일까지 (215일간)		
<b>보증내용</b>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b>특별약관</b>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주계약내용]</b>	주계약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계약기간: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400,000,000- 보험기간개시전발생된채무액		
<b>총영수보험료</b>	₩662,080-	<b>제3자납부액</b>	
<b>영수보험료</b>	₩662,080-	<b>제3자보험료</b>	주인(사업자)번호: 납부내역: 성명(성호):
<b>증권발급부서</b>	동대문지점 (02-924-0031) 유영옥	* 보험증권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b>* 사서함번호 : 2017-03656152</b>	
<b>보험대리점명</b>	일송보험 (02-928-8060) 안금석		
<b>회사사업자번호</b>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p><b>[계약후 알릴의무]</b>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p>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p> <p>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p> <p>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p> <p>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b>[소멸시효]</b>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b>[보험료의 환급]</b>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p> <p><b>[계약의 무효]</b>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p> <p><b>[분쟁의 조정]</b>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	---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장

김상택



##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카드사명	비씨	결제금액	₩662,080
카드번호	943520*****4821	승인번호	55375057
거래유형	승인	거래일자	2017/12/12 16:50:18
가맹점명	서울보증보험(주) 동대문지점		
대표자명	김상택	사업자번호	203-85-31400
전화번호	02-924-0031	가맹점번호	700838278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64 13층 롯데피트인 (을지로6가)		